

제73호(2013. 10. 10.)

##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송 주 호

1. DDA 농업협상의 논의 동향 .....	3
2. TRQ 관리강화 제안(G20) .....	6
3. 식량안보 제안(G33) .....	11
4. 수출경쟁 제안(G20) .....	16
5. 요약 및 시사점 .....	19

감 수: 문한필 연구위원      02-3299-4259      hanpil@krei.re.kr  
내용 문의: 송주호 연구위원      02-3299-4187      jhsong@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요약 ◇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DDA 협상은 12년이 경과한 지금도 타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음. 2008년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결렬된 DDA 협상은 2008년 12월 그동안의 진전 사항을 반영한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이 나온 이후 아직 별 진전 없이 5년째를 맞고 있음.

2011년 8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DDA 협상에서의 진전을 위해 우선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성과도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따라 현재 DDA 협상에서는 2013년 12월 3~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9차 각료회의(MC-9)에서 조기수확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되고 있음. 현재 3개 분야 즉, 무역원활화, 농업 분야 이슈, 개발과 관련된 이슈 등이 조기수확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여겨지고 있음.

농업 분야의 조기수확 이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TRQ 관리 강화 제안은 TRQ 소진율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에는 TRQ 관리방안을 선착순 혹은 비조건적 허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임. 식량안보 강화 제안은 개도국이 식량안보를 위해 공공비축을 할 경우 관리가격과 외부참조가격과의 차이를 AMS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임. 수출경쟁에 대한 제안은 2013년까지 선진국은 수출보조를 50% 감축하고 개도국은 2016년까지 25%를 감축하자는 제안임. 이들 제안들은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이미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쟁점이 없는 부분이었지만, 이들 항목만 따로 조기수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아 합의가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함. 이번 MC-9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면 DDA 협상은 내년 이후에 탄력을 받겠지만, 결렬된다면 상당기간 표류가 불가피함.

TRQ 관리강화 제안은 TRQ 소진율이 65% 이하인 품목 중 수입권공매를 하고 있는 대추, 인삼, 잣 등 3개 품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개도국에는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는 이미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시가구매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요건 허용제안은 별로 관계가 없음. 수출경쟁에 대한 제안도 우리나라는 수출보조가 없기 때문에 직접 연관이 적음. 하지만 이들 제안을 둘러싼 논의들은 앞으로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협상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함.



## 1. DDA 농업협상의 논의 동향

### □ 2008년의 모델리티 4차 수정안 이후 진전 없어

- 2001년 11월의 4차 WTO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 UR 협상 결과를 토대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DDA 협상이 출범함  
- DDA 협상에서는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협상의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모든 의제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종결하고 모든 참가국이 각 의제에 대한 협상결과를 모두 수용하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을 채택함
- 2003년 9월 5차 WTO 칸쿤(Cancun) 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 합의에 실패하였으나, 2004년 7월 말까지 우선 기본골격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이 채택되었음
- 2005년 12월 6차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향후 DDA 협상일정을 마련하고, 수출보조 철폐일시에 합의함으로써 DDA 협상진전의 계기가 되었음
- 2007년 7월에 팔코너(Falconer) 의장은 세부원칙 초안을 배포하였고, 이어 그간의 논의 진전을 반영하여 2008년 2월에 세부원칙 1차 수정안을, 5월에 2차 수정안을, 7월에 3차 수정안을 배포하였음
- 2008년 7월 21~29일 동안 진행된 소규모 각료회의는 30여 개 주요국 각료들이 라미(Lamy) 총장이 제시한 세부원칙 패키지에 잠정 합의하는 듯하였으나, 결국 농업 분야의 SSM 발동요건 완화를 비롯한 일부 쟁점을 놓고 미국과 인도, 중국의 대치로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음

- 2008년 8월의 소규모 각료회의 이후에도 세부원칙 타결을 위해 쟁점사항별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12월에 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비농산물(NAMA) 분야별 자유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주요국 간의 이견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함에 따라 결국 무산되었음
  - 7월 소규모 각료회의 때 라미(Lamy) 총장이 제시한 세부원칙 패키지를 중심으로 12월에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이 배포되었음
  - 주요국 간 견해 차이가 커서 쟁점이 되어온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민감품목, TRQ 신설 등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별도의 의장보고서 형태로 제시하였음(쟁점은 <부표 1> 참고)
- 2009년 이후의 DDA 논의는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각국이 경제부양에 집중함에 따라 담보 상태를 보이고 있음

#### □ 2011년 8차 WTO 각료회의에서 다자통상체제의 신뢰를 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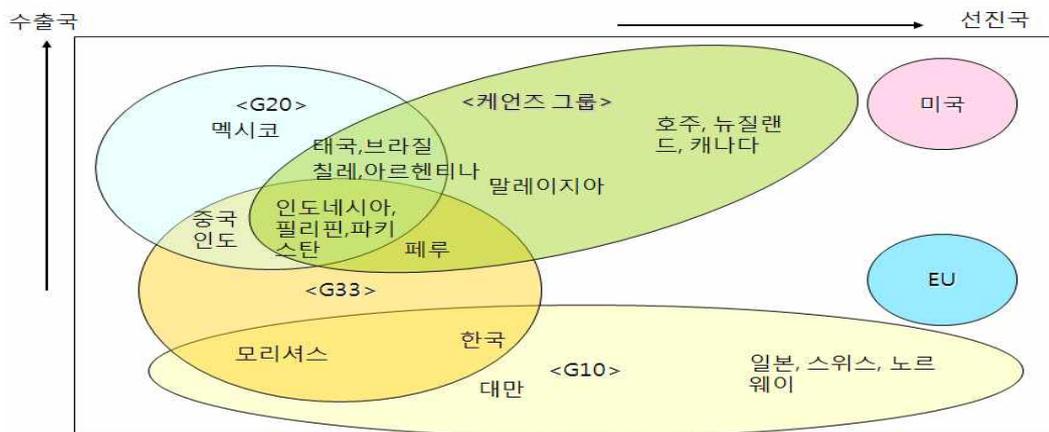
- 2011년에는 실무·고위급 회의를 통해 잔여쟁점 논의를 지속하고, 각 그룹별·양자협의 등을 진행하였음
  - DDA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전개되는 원인에 대해 경제적 자신감 부족, 협상파트너 간 신뢰 부족, 정치적 동력 부족으로 설명하기도 함. 즉,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실업문제로 인해 글로벌한 무역자유화를 주장하기 쉽지 않고, 개도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특별대우를 요구하면서 이해조정이 쉽지 않은 점, 그리고 미국과 EU 등이 다자협상보다 비교적 이해조정이 용이한 지역무역협정에 더 치우치는 점 등 때문에 DDA가 정체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sup>1)</sup>
- 2011년 12월 WTO 8차 각료회의에서는 WTO 및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DDA 협상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우선 합의 가능한 이슈를 중심으로 한 조기수확, 분야별·국가별 합의 등 다양한 협상 진전 방안이 모색되었음

1) 최석영. 2013. “다자통상체제 강화를 기대하며.” 「나라경제」 2013년 1월호.

## □ 2013년 12월에 열리는 제9차 각료회의(MC-9)에서 조기수확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

- 2013년 1월 다보스 통상장관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9차 WTO 각료회의(MC-9)에서 일부라도 합의 가능한 분야부터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기수확(early harvest)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함
  - 이에 따라 최근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농업 분야 이슈, 개발관련 이슈 등 3개 분야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농업 분야에서는 조기수확이 가능한 분야로 TRQ 관리 강화방안,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의 허용여부, 수출경쟁에 대한 규제강화의 세 가지 내용이 부각되어 현재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DDA 농업협상에서는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공조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조기수확을 위한 3개 제안도 G33, G20이 제안하였음
  - 우리나라는 G33(SSM 동조그룹, 수입개도국 그룹), G10(수입국)에 속해 있으며, 수출개도국들은 G20을 만들었음

그림 1. DDA 농업협상의 주요국과 주요 협상그룹



※ G10 : 농산물 수입국 그룹      케언즈 그룹 : 농산물 수출국 그룹  
 G33 : 특별품목 주장 그룹      G20 : 수출개도국 그룹

자료: 송주호 등(2009).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

## 2. TRQ 관리강화 제안(G20)

### 2.1. 제안 배경

- UR 농업협상에서는 당시 수입제한을 하던 품목들을 관세화하도록 하면서 일정물량에 대해 시장접근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TRQ(MMA, CMA)를 설정하였음
- 이에 따라 2012년 말 현재 49개국이 TRQ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매년 품목별로 TRQ 소진율을 WTO 농업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그러나 많은 경우 TRQ 소진율이 낮기 때문에 수출국들은 TRQ 소진율이 낮을 경우 TRQ 관리방안을 수입이 쉽게 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DDA 협상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져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항목임

### 2.2. G20의 TRQ 관리강화 제안의 주요 내용

- 2012년 9월 브라질이 개도국 수출국 모임인 G20 국가들을 대표하여 TRQ 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조기수확을 위한 분야로 제출하였음
- 주요 내용은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의 내용(본문과 부속서)을 모두 포함하고, 1조항(농업위원회가 동 제안에 따라 설정된 회원국의 (TRQ 관리)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감시해야 한다)을 추가함
  - 이 조항들은 사실상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별 쟁점이 없이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되어 왔던 항목임
- 점점 첫째 TRQ 소진율이 65% 이하인 경우 수출국의 문제 제기로 미소진 메커니즘이 발동되어 사무국이 관장하는 TRQ 추적등록(tracking register)에 우려사항을 기록하게 되고, 미소진 메커니즘 발동 후 2년 연

속 TRQ 소진율이 65% 이하이거나 TRQ 소진율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수출국은 농업위원회를 통해 해당 수입국에게 TRQ 관리방식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이행 3차연도 또는 그 이후 (a) 3년 연속 소진율이 65% 이하거나 소진율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b) 3년 동안 소진율이 매년 8%p 이상(소진율이 40% 초과한 경우), 또는 12%p 이상(소진율이 40%이하인 경우) 증가하지 않는 경우, (c) 자료에 기초한 시장여건 논의 결과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d) 일방 회원국이 농업위원회에서 미소진 메커니즘의 최종단계발동을 서면으로 희망한 경우
- 수입국은 즉시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허가방식으로 변경해야 되며, 최소 2년간 유지해야 됨. 2년간 유지 및 매년 적절한 소진율 통보가 이루어지면 이후 사무국에 통보하고 종결 처리함
- 단, 개도국의 경우 기존 방식을 계속 유지하거나,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허가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개도국은 부록 3(b)에서 제시된 증가율(8%p 또는 12%p)의 3분의 2만 증가하면 여건 충족으로 인정함

### 2.3. TRQ 관리 강화의 영향 분석

- TRQ 소진율이 높은 국가는 브라질(100%), 호주(97%), 스위스(92%), 캐나다(85%) 등이며, 우리나라는 61% 수준임
- 선진국들 가운데 미국은 55%, EU는 48%, 일본은 65%, 노르웨이는 58%를 보이고 있음. 개도국은 TRQ 관리 강화에 대해 S&D를 인정하기 때문에 TRQ 관리 강화에 대해 선진국보다는 부담이 적음
- 우리나라에 대한 사실상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는 총 63개 품목(HS-10 세번 기준 203개)에 대해 TRQ를 운영하고 있으며, 쿼터 소진율이 2008~2012 5년간 평균 65% 미만은 24개 품목이며, 이 중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허가방식 이외의 관리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은 수입권 공매방식을 택하고 있는 대추와 인

삼, 잣 3개 품목임. 이 품목들은 관리방식을 재검토해야 하지만, 개도국은 현행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은 적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TRQ 관리 방식 중 ‘실수요자 배정-신청선착순 방식’은 비조건적 허가방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표 1. TRQ 관리방식별 국가별 TRQ 소진율 (2002~2011년 평균)

단위: %

	실행 관세 (AT)	선착순 (FC)	수입 허가 (LD)	경매 (AU)	과거 실적 (HI)	국영기업 (ST)	생산자 단체 (PG)	기타 (OT)	혼합 방식 (MX)	불특정 (NS)	총계
호주	98	-	-	-	96	-	-	-	-	-	97
브라질	100	-	-	-	-	-	-	-	-	-	100
캐나다	-	66	70	-	78	100	-	100	98	-	85
칠레	-	45	-	-	-	-	-	-	-	-	45
중국	-	-	87	-	-	-	-	-	35	-	61
EU	-	65	51	-	68	-	-	-	-	-	48
일본	-	-	57	95	-	98	-	-	8	-	65
한국	46	-	42	42	83	93	41	-	81	-	61
노르웨이	78	-	22	46	93	-	-	-	-	-	58
스위스	83	-	83	95	100	-	-	-	97	-	92
대만	-	-	87	43	-	-	-	-	72	-	61
태국	100	-	34	-	-	22	77	-	-	-	45
미국	-	47	-	-	-	-	-	-	73	47	55
전체평균	68	43	59	59	57	70	63	100	65	47	

자료: WTO(2012), TN/AG/S/26 Rev. 1,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 2002-2011.

#### 2.4. TRQ 관리강화 제안서에 대한 논의 내용

- 조기 수확을 위한 두 가지 제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주제의 중요성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였음
  -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이들 분야를 분리하여 먼저 타결한다면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그리고 DDA 전체를 통해 애써 맞춰온 균형이 깨

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음

-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음
  - 미국, EU는 TRQ 관리 강화 제안이 MC-9에서 조기수확이 가능한 분야이긴 하지만, 개도국 S&D조항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함
  - 일부 국가는 G20의 수출경쟁 제안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TRQ 이슈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임
  - 중국은 개도국 S&D 조항은 농업협정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식량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TRQ 관리방안은 국내적 민감성이 있으며, 협상의 균형 관점에서 이 제안이 논의되어야 하고 오랜 협상의 결과 안정화된 이슈이므로, 개도국 S&D 조항은 현행 4차 수정안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현재 제안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임

표 2. 우리나라의 TRQ 관리방식별 소진율(2008~2012년 5년 평균): 총괄

		90% 초과~100%	65~90%	30~65%	1~30%	0%
국영무역 (2)		쌀, 참깨				
수입권공매 (4)			밤, 생강	대추	인삼	
실수요자배정 (46)	실적 기준 배정 (15)	고구마전분, 매니옥전분, 변성전분, 매니옥, 맥아, 옥수수, 보조사료, 버터, 유당, 종계	종돈, 보리, 맥주맥, 에틸알콜, 기타 가공곡물			
	신청 선착순 (31)	호밀, 밀 전분, 감자분, 옥수수(종자), 사료용근채류	녹차, 탈지분유, 기타 서류	유장, 전지분유, 인조꿀, 수수, 배합사료, 매니옥 펠리트	연유, 육분, 귀리, 생사, 참깨유박,	종유, 조란, 감자(종자), 꿀분, 잠종, 누에고치, 묘목류, 팥나무, 고구마, 조, 오렌지, 감귤류,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4)		메밀, 땅콩	마늘, 양파			
국영무역+ 실수요자배정(2)		녹두/팥, 대두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1)		고추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4)		천연꿀, 감자	참기름			잣

자료: 서진교(2013). 「G20의 TRQ 관리이행 제안」에 대한 연구.

---

## 2.5. 전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 전망

- 미국과 EU, 일본은 계속 개도국 S&D를 배제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과 EU는 중국의 G20 수출경쟁 제안 관련 주장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며 일본은 TRQ 관리 강화제안의 조기 수확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임
- TRQ 관리 문제는 조기수확 이슈 가운데 가장 반대가 적은 분야이기 때문에 합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음

### ○ 대응 방안

- TRQ 관리가 강화된다면 TRQ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다소 부담되긴 하지만, 그동안 TRQ 관리 방식을 많이 개선해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조기수확을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도국 S&D 조항은 우리에게 유리하므로 같은 입장의 개도국과 공조하여 개도국 S&D 조항의 변경은 반대할 필요가 있음. 개도국 S&D조항을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장해 볼 수도 있으나, 자칫하면 개도국 세분화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음
- 국내적으로는 TRQ 제도를 WTO 규범에 맞도록 개선 작업을 계속 추진해야 함

### 3. 식량안보 제안(G33)

#### 3.1. 제안 배경

- UR 농업협상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을 허용보조의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관리가격에 의한 수매는 외부참조가격(국제가격)과의 차이를 AMS 계산에 산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효과를 제한하고 있음
- 대부분의 개도국은 AMS가 없는 것으로 통보하였기 때문에 관리가격으로 식량작물을 수매할 경우 de-minimis 한도 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우리나라도 AMS 제약으로 말미암아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쌀을 시가매입, 시가방출에 의한 공공비축제도로 변경한 바 있음
- DDA 협상에서는 개도국에게 식량안보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비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격으로 수매하는 경우에도 AMS에 산입하지 않도록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포함하고 있었음. 여기에도 괄호([ ])가 없어 특별한 쟁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

#### 3.2. G33의 개도국 식량안보 강화 제안과 주요 내용

- 2012년 11월 인도네시아가 G33 국가들을 대표하여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허용보조로 인정하는 내용을 조기수확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이 제안서는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4차 수정안(Annex B)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함
- UR 농업협정 Annex 2는 감축약속에서 면제를 받는(Green Box) 정부지출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2항) 정부서비스계획-일반서비스 항목에 (h)를 신설하고,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3항 주석)을 수정하고 있음

- 일반서비스의 항목 신설
  - (h) 개도국의 농업인 정착, 토지개혁 프로그램, 농촌개발과 농촌생계 안보에 관련된 정책과 서비스, 즉 농촌개발과 빈곤완화를 위한 하부 구조 서비스, 토지의 회복, 토양보전과 자원관리, 가뭄관리, 홍수통제, 농촌고용계획, 영양적인 식량안보, 빈곤대상 확인과 정착 프로그램의 공급
- 수정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 관련 조항 주석)
  - 현행 UR 협정문 주석 5: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정부 비축계획은 식량안보 목적의 식량의 재고물량을 관리가격으로 구매·방출하는 계획을 포함하며, 이항의 규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됨. 단, 구매가격과 외부참조가격과의 차이는 보조총액측정치(AMS)에 반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정 내용: (추가) 다만, 저소득 혹은 자원빈약 생산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개도국이 식량의 재고를 취득하는 것은 AMS에 산입할 필요가 없음

### 3.3. 주요 개도국의 식량안보 관련 정책

- 대부분의 개도국은 UR 협상에서 AMS 지급실적이 없는 것으로 양허계획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을 위한 수매제도를 de-minimis 한도 이내로 지출해야만 하는 제약을 갖고 있음
  - 중국은 AMS 한도가 0이므로 de-minimis 이내 수준으로만 감축대상 보조를 운용할 수 있으며, 쌀과 밀에 대해 가격지지를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AMS 한도가 0이며, Green Box 내역만 통보하고, 2008년까지 시장가격지지는 없는 걸로 통보하였음
  - 태국은 AMS 한도가 있지만 쌀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지지를 하지 않고, 기타 품목특정적인 보조(paddy pledging scheme과 soft loan measure)로 2007년에 쌀에 대해 150억 5,400만 바트의 AMS를 지급하였다고 통보함. 태국의 AMS 한도는 190억 2,800만 바트임(일부 국가들은 태국이 벼 담보제도(paddy pledging scheme)로 시장가격보다

40% 이상 높게 쌀을 구매하고 있으며 쌀 재고가 누적되어 조만간 국제시장에 덤핑 수출될 것이며, 태국은 AMS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인도는 AMS 한도가 0임. 인도는 주요 품목(쌀, 밀, 면화, 황마)에 대해 가격지지를 하고 있는데 모두 관리가격이 외부참조가격보다 낮은 수치(음)이며, de-minimis로 표기하고 있음

표 3. 주요 개도국의 쌀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

	관리가격	외부참조 가격	적용 물량 (eligible production)	AMS	비고
중국 (2008)	1,520 (위안/t)	2,659	1,854 (1,000 MT)	-2,112 (백만 위안)	de minimis
필리핀 (2010)	26.15 (페소/kg)	4.56 (페소/kg)	326 (1,000 MT)	7,045 (백만 페소)	de minimis (생산액의 3.0%)
인도 (2004)	180 (\$/t)	262.5 (\$/t)	22,830 (1,000 ton)	- 1,884 (백만\$)	de minimis
코스타리카 (2011)	600.25 (\$/t)	223.78 (\$/t)	277,541 (ton)	104,485 (천 \$)	현행 AMS

주: 적용 물량은 구매한 물량을 말함. 필리핀의 2010 쌀 생산액은 231,844 백만 페소임.

자료: G/AG/N/CHN/21(2011.10), G/AG/N/PHL/42(2013.3), G/AG/N/IND/7(2011.6), G/AG/N/CRI/40/Rev.1(2013. 2).

-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서 관리가격에 의한 매입을 시장가격에 의한 매입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제안은 우리나라에는 별 영향이 없음

### 3.4. 논의 동향

-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해 선진국들은 이 경우 재고가 늘어나 수출보조로 남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가 심하였으나, G33국들은 현재의 모델리티에도 관련 규정은 괄호([ ])가 없기 때문에 안정화된 내용이라고 주장하였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재의 기후변화라는 환경과 높은 곡물가격하에서 식량안보는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음
  - 하지만 일부 국가는 이 수정제안이야말로 전체 모델리티에서 떼어내 별도로 합의해야 하면 공공비축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는 규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하였음. 또한 일부는 아직 이 제안은 다자간에 깊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였고, DDA를 타결하여 농산물 무역을 개혁하면 식량안보는 크게 높아진다고 주장하였음
- G33 제안 첫 항목인 일반서비스 (h) 신설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대는 없었음
- 그러나 AMS 배제 제안에 대해 반대가 많아지자 G33 제안국들은 공공비축 식량구매 시 개도국의 AMS 부담 경감을 위한 네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음
  - i) 공공비축 관련, 개도국 de minimis 상향(10 → 15%)
  - ii) 공공비축 AMS 산정과 관련한 외부참조가격 기준기간 조정
    - \* 기준기간 : 현재(1986~1988년) → 변경(최근 3년)
  - iii) Eligible production의 개념 조정(총생산량 → 수매량)
  - iv) 관리가격 산정 시 운송비 등 비용을 제외한 농가수취가격 반영
- 하지만 이러한 대안에 대한 회원국 간 논의 결과, de minimis 상향조정이나 고정외부참조가격 변경에는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대안으로 관리가격 계산 시 지나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UR 협정문 18조 4항을 적용하거나, 항구적 해법 마련 전까지 평화조항 (peace clause)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됨

### 3.5. 전망 및 대응방안

- 전망
  - 9월과 10월 중 미국과 인도간에 무역원활화와 G33 제안간 연계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향후 논의는 잠정적 해결방안에 집중될 전망이다

## ○ 대응 방안

- 우리나라는 쌀 수매 정책을 폐지하고 시가구매, 시가 방출에 의한 공  
공비축 제도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로 변경하였으므로 G33 제안이  
현재 우리에게 즉시 도움이 되지는 않으나 만일에 필요시 이 제도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동 제안을 지지함. 또한 곡물 수출국이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G33 공동제안국으로서 식량안보 제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미국-인도 간 논의경과를 모니터링하여 조속한 해결을 촉  
구할 필요가 있음

## 4. 수출경쟁 제안(G20)

### 4.1. 제안 배경

- UR 협상에서는 수출보조금을 선진국은 6년 동안 금액기준 36%, 물량 기준 21%를 감축하도록 하였고, 개도국은 10년 동안 금액기준 24%, 물량기준 14%를 감축하도록 한 바 있음
- DDA 협상에서는 수출보조가 무역왜곡의 대표적인 조치라는 판단하에 2005년 홍콩각료회의에서 선진국은 2013년까지, 개도국은 2016년까지 수출보조를 완전 철폐하도록 합의한 바 있고, 이 내용은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도 괄호([ ]) 없이 포함되어 있음

### 4.2. G20의 수출경쟁 제안의 주요 내용

-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2013년까지 선진국들은 수출보조를 철폐하도록 하였으나 DDA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선진국들이 2013년에 수출보조 철폐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어 왔음

표 4. 모델리티 4차 수정안과 G20 제안 비교

내역	모델리티 4차 수정안	G20 제안 (5. 21.)	G20 수정제안(6. 14.)
수출 보조	- 2013년 선진국 완전 철폐(개도국 2016년)	- 2013년 내 선진국만 50% 철폐 (개도국 철폐의무 제외) - 면화 수출보조는 홍콩각료선언대로 2013년까지 철폐	- 2016년까지 개도국 수출보조 25% 감축
	- 농업협정 9.4조(개도국 수출물류비 등)에 따른 지원은 5년 후인 2021년 철폐	- 수출보조 전면 철폐 5년 후 철폐(수출보조 전면 철폐시한이 명시되지 않아서 사실상 철폐시한 없음)	
수출 신용	- 상환기간 최대 180일 (개도국은 360일로 시작, 4년차 180일로 조정)	- 540일 (개도국 1,080일, 3년 내 540일로 조정)	

주: 수출국영무역 및 식량원조는 제안대상에서 제외함.

- 브라질이 G20을 대표하여 수출경쟁에 관한 제안을 제출(5. 21.)하였는데, 현행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선진국들만 2013년에 수출보조를 50% 감축하자고 제안하였고, 이후 미국, EU 등의 반발을 고려하여 개도국에 대해서도 2016년까지 수출보조 25% 감축의무를 6월 14일 추가 제안하였음
- 수출신용은 상환기일을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의 최대 180일에서 최대 540일로 연장하여 다소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음

### 4.3. 영향 분석

- UR 협상에서 25개국이 품목별 수출보조 한도를 설정하였음
  - 그중 선진국은 미국(13개), 호주(5), 뉴질랜드(1), 캐나다(11), 유럽연합(20), 아이슬란드(2), 노르웨이(11), 스위스(5) 등임
- WTO 수출보조 집행실적을 통보한 내용을 분석하면, 2001년 이후 수출보조금 예산지출 한도의 50% 이상을 지출하여 수출경쟁 제안서가 채택될 경우 영향을 받을 국가와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캐나다는 2003년 이후 탈지분유, 치즈, 가타유제품, 혼합생산물 등이 계속 한도의 50% 이상으로 보조받고 있음
  - EU는 2006년 이후 2009년까지는 대상품목이 없음
  - 노르웨이는 치즈와 농산물 가공품이 매년 대상이며, 그 외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버터 등이 가끔 50% 이상 보조를 받음
  - 스위스도 과일과 감자가 가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2002년 이후는 대상품목이 없어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4.4. 논의 동향

- 브라질은 G20을 대표해 수출보조 철폐는 홍콩 각료회의의 위임사항

---

(mandate)이며, 2013년 수출보조 철폐시한 도래 등으로 MC-9에서의 수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호주도 케언즈 그룹을 대표해 2013년 수출보조 철폐는 회원국들의 약속이므로 문제제기로 끝나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음

\* 케언즈 그룹: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 그룹

○ EU와 미국 등은 DDA 이슈들 간의 균형이 중요하며, 단순히 발리 MC-9에서의 최대 수확을 목표로 농업 분야에서 과도한 성과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DDA 포괄적 타결이 전제조건이므로, DDA 타결 없이 2013년 시한은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견을 제기하고 있음

#### 4.5.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 전망

- 수출보조를 지급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농산물 수출국 간의 대립이 심해 12월 MC-9에서 수출경쟁 이슈가 조기수확 되는 것은 가장 힘들 것으로 전망됨

○ 대응 방안

- 우리나라는 수출보조가 없으므로 동 제안에 직접적 이해관계 없음 특히 제안서에 개도국의 수출 물류비 지원은 철폐시한이 없으므로 별 영향은 없음

- 따라서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협상 동향을 주시하며 수출경쟁 조치의 무역왜곡 효과를 경계하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5. 요약 및 시사점

- 현재 제네바에서는 2011년부터 12년째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DDA 협상의 불씨를 살려보고자 금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WTO 제9차 각료회의(MC-9)에서 조기수확(early harvest)이 가능한 분야부터 타결하기 위하여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현재 3개 분야, 즉, 무역원활화, 농업 분야 일부사항, 개발 관련 이슈들이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만약 이번 12월의 각료회의에서 일부 성과가 도출된다면, DDA 협상은 다시 탄력을 받아 내년 이후 진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지만, 만일 성과 없이 끝난다면 DDA 협상은 사실상 폐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최근에는 오히려 많은 국가들이 DDA보다는 TPP(환태평양 경제공동체 협정), TTIP(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같은 복수국가 간 FTA 협상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 DDA 협상은 탄력을 잃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역 간 무역협정인 FTA에도 소외되어서는 곤란하겠지만, 다자간에 무역체계를 규율하는 WTO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MC-9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함
- 그동안의 DDA 협상은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 개도국긴급관세조치(SSM)의 내용, 관세상한 인정 여부, TRQ 신설 여부 등 문제에 집중하였고, 이번에 농업 분야에서 조기수확 대상으로 제기된 세 가지 제안(TRQ 관리, 식량안보, 수출경쟁)은 모두 이미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안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라 비교적 합의가 쉬울 것으로 여겨졌음

- 하지만 조기수확 접근법은 협상결과 전체를 일괄 타결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쉬운 것부터 타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별 이점이 없었던 내용일지라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다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음
  - 특별한 상황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MC-9의 타결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며 DDA의 앞날은 험난하다고 여겨지고 있음
- TRQ 관리강화 제안은 TRQ 소진율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에 TRQ 관리방안을 선착순 혹은 비조건적 허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임
  - 우리나라는 그동안 TRQ 관리방안을 WTO 규범에 맞게 계속 개선작업을 해왔고, 현재 TRQ 소진율이 65% 이하인 품목 중 수입권공매를 하고 있는 대추, 인삼, 잣 등 3개 품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개도국에는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식량안보 강화 제안은 개도국이 식량안보를 위해 공공비축을 할 경우 관리가격과 외부참조가격과의 차이를 AMS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임
  - 우리나라는 이미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AMS 부담에 서는 벗어나 있음. 따라서 동 제안이 채택되어도 별 영향이 없음
- 수출경쟁에 대한 제안은 2013년까지 선진국은 수출보조를 50% 감축하고 개도국은 2016년까지 25%를 감축하자는 제안임
  - 우리나라는 수출보조가 없고 개도국에 허용된 수출물류비용만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이 조기수확되더라도 큰 부담이 없음
- 하지만 이들 제안을 둘러싼 논의들은 앞으로의 협상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협상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함
  - 특히 조만간 쌀이 관세화로 전환되면 쌀의 TRQ 소진율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개도국 지위를 항구히 유지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제네바에서의 DDA 논의가 현재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할 것임

부표. 1. DDA 농업 모델리티 잔여 쟁점 및 주요국 입장

	4차 수정안	주요국 입장
TRQ 신설	○ 신설불가/[가능시 세번의 1%] [민감품목보다 2% 추가 보상]	○ G-10 : 도입 필요 ○ 수출국 : 기본 반대입장, 필요 시 충분한 보상 필요
특별 품목	○ 가능품목수: 12%, Zero cut : 5% ○ 평균감축률 : 11%	○ G-33 : 다른 이슈와 타협 산물, 재협상 반대 - 인니 : SP 수치는 각료 간 결정 필요 ○ 미국 : 수용불가 ○ 수출 개도국 : 자국 품목 해결 요구
민감 품목	○ 개수 : 4%+2%(EFTA 및 일본) ○ TRQ 증량: 소비량의 4%	○ 일본, 캐나다 : 8%, 6% 필요 ○ 수출국 : 4%(품목 추가 시 보상 수준을 높일 필요)
SSM	○ UR 양허관세 초과 : 제한 인정(W/7) - 120-140 : 33%, 8%p - 140 이상 : 50%, 12%p * Prorating, Cross-check, Seasonality, Duration, Spillover 제약 조건 도입	○ G-33 : W/7의 제 조건 수용불가 ○ 수출국 : 발동제한 조건 필요 - 미국 : 구체적 상황, 대상에 중점 - 브라질 : 정상적인 무역 및 수입급증에 중점 ○ EU : 원점에서 재검토 주장
관세 상한	○ 관세상한(100%) 적용 예외 규정 -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 중 1%] * TRQ증량 등 추가보상(0.5%) 필요 ○ 관세상한(150%) 적용 예외 규정 - 특별품목 및 민감품목 * 민감품목은 추가 보상 필요(0.33%)	○ G-10 : 도입에 반대하나 Rev.4 및 W/6기초로 논의 가능 ○ 수출국 : NAMA 협상과의 균형을 감안, 도입 필요 - 비민감 1% 예외 보상 수준 (전 민감품목 0.5% 증량) 불충분
관세 단순화	○ 목표 : 100% 단순화/[90%] ○ 방식 : Annex N 적용	○ G-10/EU : 90%, 85% 주장 ○ 수출국 : 100% 단순화 주장 ○ EU : Rev.4 및 Annex N과의 불일치 해소 필요
Blue Box 상한	○ 미국 : 1995-2000년 BB 지급액에 기초, 2002년 농업법 품목별 지급 비율의 [110% or 120%]	○ 미국 : 정치적 이슈로 인식 ○ 중국 : NAMA와 수평적 이슈 ○ 브라질 : 105%
면화	○ 면화보조 : 일반 AMS보다 더 감축 ○ BB : 일반의 1/3 설정	○ 미국 : 다른 pillar 와 종합 검토 ○ Cotton 4 : 신속 해결 ○ G-20 : Cotton 4 지지
열대 작물/ 특혜 잠식	○ 열대작물 : [25%이하 철폐 or 10% 이하 철폐] ○ Annex H 품목은 개도국관세 감축기간(10년) 적용	○ 인도 : 동 내용 논의 시 초청 받지 못했으므로 동의할 수 없음 ○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모리셔스 : 재협상 곤란

자료: 농식품부(2013). DDA 협상 논의동향 설명자료. 내용 일부 수정.

##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 2013년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송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이현근)

-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 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윤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욱,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운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회)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견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

KREI 농정포커스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10. 9

발 행 2013. 10. 10

발 행 인 최세균

운영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mailto:munwonsa@hanmail.net)

---

ISBN: 978-89-6013-484-3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